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12. 10 선고 2024가단525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2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
나. 2022. 10. 20.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 김진영

별지